

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(안)

I 추진 배경

-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*으로 인해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, 신입생 및 재학생 등 대상자별 구체적 이수 요건 및 횟수,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

*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: 대통령령 제31434호, 공포 및 시행 '21.2.9.

II 관련 법령

「교원자격검정령」

[별표 1]

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
부칙 제3조(2021. 2. 9.)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.

「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 p.74~75

3) 성인지 교육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①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
㉠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수업연한 기준)을 이수한 사람: 2회 이상

㉡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수업연한 기준)을 이수한 사람: 4회 이상

※ '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

한다.

- ④ 편입학,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※ 예시: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,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,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.

Ⅲ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
- 2021학년도 입학자(선발자)부터
 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대학원과정): 2회 이상 이수
 -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 학사과정): 4회 이상 이수
 - 사범대학 편입학자의 경우 ‘편입학한 학년도-2’ 학년도의 기준을 적용
-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
 - 2021. 2. 9.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(규정학기 기준) (※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)
 - 2021. 2. 9.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

Ⅳ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

- 성인지 교육 내용

차시	교육 내용	강사
1	□ 대학과 인권 □ 인권교육 □ 일상 속 성평등	인권센터
2	□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디지털 성범죄 포함) □ 가정폭력 예방교육 □ 성매매 예방교육	(인권·성평등교육을 1, 2차시로 인정함)
3	□ 학교현장의 성인지 교육의 실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성인지 감수성- 성인지 교육- 성교육(학교 성교육의 실제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부설학교 교과연계 사례중심	서울사대부고 보건교사 김현숙
4	□ 나부터, 지금부터, 성인지교육 실천하기 (학교현장의 성인지 교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-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의 운영 사례	서울사대학부중 교사 이병인

○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 및 이수 기간

1) 서울대학교 인권센터(<https://helplms.snu.ac.kr/>) 인권·성평등 교육 이수 → 수료증 다운로드
※ 반드시 2022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(2021학년도 이전 수료증 인정 안됨)

2) 학생서비스>교직/교육인증>교직>성인지교육신청

3) 교직/교육인증>교직>성인지교육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

ETL SNUON > 강좌목록 > 2022 성인지 교육 이수

4) 이수 기간: 2022.04.20.~ 12.20.(상시)

- 이수 신청 기간은 학기별 별도 안내

V 유의사항

-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**부득이한 경우**(학적 변동 등)에 한하여 횟수 기준으로 운영함. 이 경우 공문 등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함.
- 편입학,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(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) 적용

VI 행정사항

-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확인서를 받아 학과자체 보관
- 성인지 교육 운영 :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(12-204호)
- 관련 기타 사항 문의처 : 02-880-4245

[성인지 교육 안내사항]

○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「별표1」 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

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1434호, 공포 및 시행 '21.2.9.)

「교원자격검정령」

[별표 1]

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이 실시하는 **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**. 다만, **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**

부칙(2021. 2. 9.) 제3조(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에서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”는 “2회”로 본다.

○ 교육내용 (1회 이수)

차시	교육 내용	이수방법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대학과 인권 □ 인권교육 □ 일상 속 성평등 	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·성평등 교육 https://helpims.snu.ac.kr/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디지털 성범죄 포함) □ 가정폭력 예방교육 □ 성매매 예방교육 	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학교현장의 성인지 교육의 실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인지 감수성 / 성인지 교육 / 성교육(학교 성교육의 실제) ▶ 부설학교 교과연계 사례중심 	온라인 교육 (SNUON 특강)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나부터, 지금부터, 성인지교육 실천하기 (학교현장의 성인지 교육) -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-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의 운영 사례 	

○ 양성과정별 이수 기준

사범대학(학부)	4회	일반대학 교직과정	2회	대학원 (양성과정)	2회
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	----

※ '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
※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확 인 서

소속		학번		이름		등록 학기	
----	--	----	--	----	--	----------	--

상기 위인은 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성인지 교육을 **학년도별 1회 기준으로 졸업 전 회 이상 받아야 함**을 _____에게 안내받았으며,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졸업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.

위 본인 : (서명)